

V. 제품인증신청자 및 인증된 제품의 의뢰자의 권리, 의무

1.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표시하기 위해 동일한 마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하나 이상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각 인증마크의 의미에 대한 혼동을 피하도록 인증업체가 제품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며 해당마크의 표시 전에 그 표시내용 및 도안을 첨부하여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 이러한 것이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위해 다른 마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동일로고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인증기관의 법인 로고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.

2. 인증서 및 마크의 사용

해당 인증제품에 표시하는 제품인증마크의 도안, 규격 및 색상 등은 첨부1(S마크) 및 인증마크 표시물 표준화 규정집 첨부2(V체크마크)에 따른다.

2.1 제품인증을 받은 의뢰자는 그 공장의 정문 및 사무실 등에 표시판을 게시할 수 있다. 단, 스킴유형 1b 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.

2.2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제품인증표시를 확대, 축소하여 이를 홍보,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, 제품의 포장,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. 스킴유형 3, 5의 경우 약정서(QP양식13-01)상에 인증품목, 인증분야, 인증범위로 표시하고 시스템 1b의 경우 약정서(QP양식13-04)상에 인증품목, 인증분야, 인증범위, Lot번호, 수량으로 표시하며,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

2.4 제품표시 인증을 받은 의뢰자는 해당 법률, 관련기준 및 인증기관 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포장용기 등에 그 상품이 제품인증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표시규정과 표시에 대해 해당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, 인증서(QP양식13-02) 발급 전에 의뢰자가 이를 준수토록 설명 및 조치한다.

2.5 의뢰자는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제품인증마크 및 인증서(QP양식13-02, QP양식13-03)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표시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주지시키며 약정서(QP양식13-01, QP양식13-04)에 명기한다.

2.6 인증책임자는 인증서(QP양식13-02, QP양식13-03) 양식을 인쇄하여 제품인증시마다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양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
2.7 인증책임자는 광고, 카달로그 등에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, 제품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이선스, 인증서 (QP양식13-02, QP양식13-03)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고, 표시공지, 인증취소에 관한 문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

[첨부 2]

V체크마크



Grid

